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5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이해충돌검증보고서 추가〉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55호)

2025. 11.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장겸 · 박충권 · 조정훈 · 추경호 · 최은석 · 서범수
이상휘 · 서천호 · 강대식 · 인요한 · 서일준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 의안번호 : 1295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직업·경력, 병역신고사항, 재산 및 납세 실적,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 ----- ----- ----- ----- -----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한한다.
1. ~ 5. (생략) <신설>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보고서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② 병역신고사항, ③ 재산신고사항, ④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⑤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한하여 「국가공무원법」¹⁾에 따라 작성한 이해충돌 검증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조치로 이해됨.

이를 통해 국무위원후보자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된 불필요한 자료요구가 줄어들어 따라 국회의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인사권자인 대통령(대통령당선인)은 국무위원후보자 임명·지명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무위원 임명 전에 이해충돌 소지를 검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과 의결을 전제한 법안은 적용대상을 국무위원후보자로 한정하여,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등 국무위원이 아닌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 검증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및 검증) 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산상 이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증명서류를 같은 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 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 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문 의 처
02)6788-5015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생략)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및 검증)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산상 이해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여금 재산의 처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증명서류를 같은 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